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	과 장 이춘무 042-481-8172 서기관 여덕호 042-481-5187
	배포 즉시 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	

변리사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

-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-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(법률 제13843호)에 따른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(8.22)을 거쳐 8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

○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‘집합교육’(250시간)과 ‘현장연수’(6개월)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.

-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(10시간), 산업재산권법 실무(50시간),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(120시간) 등 공통 과목(180시간)과 심판·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(70시간)으로 구성된다.

-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(OJT)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.

○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‘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’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<실무수습 관련 규정의 개정 배경>

- 실무수습 기간과 내용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,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결정
 - ① **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을 필요·최소한으로 설정**하여,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**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**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되, 실무수습을 받는 **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**
 - ② 실무수습이 등록 요건에서 자격 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길어지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**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함께 길어지는 점**
 - ③ 대체로 6개월 내외의 실무수습을 받는 **타 자격사**(변호사, 세무사, 관세사, 노무사 등)와의 **형평성**

□ 변리사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

- 이와 동시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**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** 변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① **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**(시행령 개정안에 반영)
 -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.
 -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,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.
 - 앞으로는 변리사의 **‘출신 학과’ 및 ‘취득 학위’를 반드시 공개**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.

② '불성실 변리사 신고' 코너 개설

- 다음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 '불성실 변리사 신고' 코너를 개설(9월 초)하기로 했다.
 -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,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 - '불성실 변리사 신고' 코너의 개설로 변리사가 직무윤리를 준수하고 신의·성실로써 대리를 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- 특허청은 앞으로도 일반 법률 소비자가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아 강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참고 1

개정 변리사법 시행령, 시행규칙 주요 내용

① 실무수습의 기간

- 실무수습을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고,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기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규정함

※ 집합교육의 세부 내용(시행규칙 반영)

- 공통(180시간) : 소양교육(10), 산업재산권법 실무(50),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(120)
- 선택(70시간) : 심판·소송 실무(70), 과학기술의 이해(70)
- *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‘과학기술의 이해’를,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‘심판·소송 실무’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

② 실무수습 실시기관

-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관*에서 실시

* 강의시설, 전담인력, 유사 교육 실적, 집합교육 계획 등을 갖춘 기관

- 현장연수는 특허법인,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,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등에서 실시

③ 실무수습의 불인정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을 제출하거나 현저히 부실한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, 그 실무수습을 불인정하도록 함

④ 변리사 정보공개범위 확대

- 특허출원인의 변리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정보공개 범위*에 졸업 학과 및 취득 학위를 추가하여 특허출원인과 변리사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

* 현행 정보공개 범위 : 성명, 사무소 정보, 자격취득 사항, 전문분야 등

1. 개정 배경 및 경과

- (배경)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던 것을 일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고,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

제3조(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.

1.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
2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
※ **현행 실무수습**: 변리사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, 집합교육(250시간)과 현장연수(10개월)로 구성
실무수습이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만의 등록요건에서 모든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변경됨

- (입법예고안)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* 후 실무수습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('16.5.11~20)

* 변리사회, 변협, 로스쿨, 산업계, 연구소 등 대상으로 간담회, 토론회 등 개최(2월~5월)

- 실무수습을 집합교육(400시간), 현장연수(10개월)로 구성
- 관련 실무경험 등이 있는 경우 **실무수습의 일부를 감면**하여 중복교육을 방지
-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가 집합교육 담당
- 현장연수는 변리사 사무소,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담당

- 변리사회와 변협 등 이해관계집단이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대립
- 변리사회 :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을 **입법예고안보다 강화**하고, 변리사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
 - 변협 : 실무수습이 과도하여 **진입장벽으로 작용**하므로 완화하고, 변호사협회도 집합교육을 담당(시행령에 명시)해야 한다는 입장

- (관계부처 합의)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변리사회, 변호사협회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부처 간 합의를 도출(집합 250시간, 현장 5개월)

- (규개위 심사) 부처합의안 중 **현장연수 기간을 연장**할 것을 권고(7.8)하여, 이를 6개월로 연장하고 관리 강화 등 보완사항 제시(7.22)

2. 입법예고안 및 최종안

□ 입법예고안 및 최종안 비교

구분	입법예고 안	최종안
집합교육 시간	▪ 400시간 및 사전이수 일부 인정	▪ <u>모든 대상자가 250시간 이수</u>
현장연수 기간	▪ 10개월 및 사전경력 일부 인정	▪ <u>모든 대상자가 6개월 수습</u>
집합교육 기관	▪ 특허청(국제지식재산연수원) ▪ 변리사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	▪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

※ 집합교육의 세부 내용

- (원칙) 공통 및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,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내용으로 구성
- **공통**(180시간) : 직업윤리(10), 산업재산권법 실무(50),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(120)
- **선택**(70시간) : 심판·소송 실무(70), 과학기술의 이해(70)
- *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‘과학기술의 이해’를,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‘심판·소송 실무’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

□ 입법예고안의 변경 이유

- (실무수습 기간) ① 변호사, 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전체 기간(6개월), ②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**변리사회 의견**, ③ 자격 취득시 까지 신분의 불안정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반영

※ 변리사회장은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에게 동일한 수습 적용(280시간, 6개월)을 제안(6.3)

<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사례>

구분	변호사	세무사	관세사	법무사	공인노무사
실무수습기간	6개월	집합 1개월 실무 5개월	집합 1개월 실무 5개월	집합 3주 실무 9주	집합 1개월 실무 5개월

- (집합교육 기관) 국가 자격의 경우 자격 부여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실무수습을 해당 자격사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는 없으며, 관할 관청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원칙
- 변리사 시험 합격자, 변호사 등 다양한 실무수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교육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참고 3

변리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

<예비 변리사 관리>

□ 현장연수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및 관리 강화

○ 수습 변리사가 현장연수 기간 동안 변리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변리사의 전문성을 유지

- 수습 변리사가 변리업무 전체를 1회 경험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되어 6개월의 현장연수로도 변리업무 전체를 2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

※ 변리업무 개요

- 출원 : 발명자 인터뷰, 선행기술 조사, 명세서 작성, 의견서 작성 등
- 심판(결정계, 당사자계) : 심판청구서 작성, 보정서 및 의견(답변)서 작성, 구술심리 등
- 심결 취소소송 : 소장 작성, 기술 설명, 변론, 상고 등

※ 변리업무 1회 경험에 소요 되는 기간

- 특허 (2개월) : 출원 2주, 심판 3주, 소송 3주 등
- 상표·디자인 (1개월) : 출원 1주, 심판 1.5주, 소송 1.5주 등

-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(연간 3%)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행정 처리는 '10년에 비해 약 2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, 수습 변리사가 과거에 비해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물량과 처리속도가 충분하게 뒷받침됨

※ 특허행정 관련 주요 통계

- 특허출원 : 160,921 건('05) → 170,101 건('10) → 213,694 건('15)
- 특허심사 처리기간 : 18.5 개월('10) → 10 개월('15)
- 상표심사 처리기간 : 10.5 개월('10) → 4.7 개월('15)
- 디자인심사 처리기간 : 10.0 개월('10) → 4.4 개월('15)
- 특허심판 처리기간 : 10.6 개월('10) → 7.2('15)

- 변리 업계가 개인 사무소 중심에서 특허법인 중심으로 변경*되어 현장연수 기간에 따른 법률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* 특허법인 수 : 5('00) → 23('05) → 57('10) → 107('15) → 111('16.6)

**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비율 : 73.5%(구성원 수 1,714명, 시험출신 변리사 2331명, '16.6)

- 수습 변리사는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습 지도관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변리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임
- 수습 종료 후에도 특허법인에서 계속 근무(평균 근속 기간 : 5.4년)하고 있으며 법인에서의 평가에 따라 담당업무가 구분(명세서 작성, 번역, 심판 등)됨
- 대외적으로는 일반 법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변리 서비스를 특허법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품질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- 변리사의 현장연수 관행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

<현장연수 개선 방향>

구분	현행	개선
내용	명세서 보조 또는 번역에 국한	변리업 전반을 경험
수습 일지	1회/월	1회/2주, 결과물 제출
점검	없음	수시 점검

<현장연수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>

- (내용) 그간 현장연수가 경우에 따라 명세서 작성만 하거나 번역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변리 업무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음
- (수습 일지) 매월 1회 수습일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였으나, 2주 1회로 변경하고 수습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습 대상자가 현장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겠음
- (점검) 현장연수 기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없었으나,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습을 내실화하겠음

<등록 및 개업 변리사 관리>

□ 변리사의 정보공개 강화

- 변리사의 전문분야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
 - 변리사는 기술분야별(전기, 전자, 기계, 화학 등)로 특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여 법률 소비자가 분야별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음

□ 불성실 변리서비스 억제

- 「불성실 변리사 신고」 코너 개설
 - 기업 등의 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 사례*(17명, 변호사 1명 포함 '01~15) 및 민원접수 건(39명, '11~15)의 분석 결과, 징계 및 민원 제기된 변리사의 평균 업무 경력은 10년 6개월임
 - * 징계 사유 :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출원인이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
 - 출원인이 변리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전문성 부족보다는 대리인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로 판단됨
 - 따라서, 기업의 피해 방지는 변리사 현장연수 강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징계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
- ⇒ 변리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「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」를 개설하고 피해가 큰 경우 해당 변리사의 징계를 추진